



2022회계연도 관악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 의견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2023년 5월 12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감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3년 4월 5일부터 2023년 5월 4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 채권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

장 현 수



위 원

김 원 개



위 원

유 영 기



위 원

김 연 숙



위 원

김 대 원



목 차

I . 결 산 검 사 경 과	3
II . 결산검사 총괄현황	5
1. 재 정 여 건	7
2. 세 입 · 세 출 결 산	8
3. 기 금 결 산	16
4. 재 무 제 표 결 산	18
5. 성 과 보 고 서	22
6. 결 산 서 첨 부 서 류	23
(1) 공유재산	23
(2) 물 품	24
III . 개 선 및 권 고 사 항	25
1. 세 입 부 문	27
2. 세 출 부 문	36
3. 예 비	45
4. 기 금	47
5. 재 무 제 표	50
6. 성 과 보 고 서	54
IV. 수 범 사 례	55

1. 결산검사 경과

1.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23. 4. 5. ~ 5. 4. (20일 간)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대표위원	장현수	결산검사 총괄	구의원
위 원	김원개	세입·세출, 성과보고서, 성인지예산	(前)구의원
위 원	유영기	세입·세출, 보조금, 첨부서류 22종 등	세무사
위 원	김연숙	세입·세출, 기금, 공유재산	(前)공무원
위 원	김대원	세입·세출, 재무제표, 물품	세무사

3. 결산검사 세부일정

구 분	일자별	내 용	비 고
구청,보건소 의회사무국	2023. 4. 5.	일정 및 검사방향 협의	
	2023. 4. 10. ~ 5. 4.	부서별 결산검사 실시	
	2023. 5. 8. ~ 5. 12.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 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간 협의

II . 결산검사 총괄현황

1. 재정여건

○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일반회계	세입	717,826,154,628	838,061,479,055	1,180,421,219,055	1,185,123,183,917	1,284,135,021,470
	세출	615,125,743,390	709,808,948,530	1,034,951,840,128	1,003,162,249,748	1,081,354,786,506
	결산상잉여금	102,700,411,238	128,252,530,525	145,469,378,927	181,960,934,169	202,780,234,964
특별회계	세입	30,653,800,949	28,196,223,936	28,774,178,602	28,388,706,961	23,103,985,140
	세출	13,832,632,890	13,851,252,029	12,466,996,061	23,283,058,320	15,929,947,550
	결산상잉여금	16,821,168,059	14,344,971,907	16,307,182,541	5,105,648,641	7,174,037,590
기 금	수입	6,785,478,163	16,865,645,956	25,090,607,618	23,458,406,910	31,761,811,942
	지출	4,221,672,500	4,485,704,820	10,757,519,500	8,645,004,268	15,971,108,475
	결산상잉여금	2,563,805,663	12,379,941,136	14,333,088,118	14,813,402,642	15,790,703,467
총 계	세입(수입)	755,265,433,740	883,123,348,947	1,234,286,005,275	1,236,970,297,788	1,339,000,818,552
	세출(지출)	633,180,048,780	728,145,905,379	1,058,176,355,689	1,035,090,312,336	1,113,255,842,531
	결산상잉여금	122,085,384,960	154,977,443,568	176,109,649,586	201,879,985,452	225,744,976,021

○ 2022회계연도의 재정규모가 늘게 된 것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증가, 지방소비세 증가 등으로 인한 세수 증가 및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함이다.

○ 일반회계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현연도에 2,221,572원이다.

2.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 2022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 (C=A-B)
합 계	1,254,073,416,031	1,307,239,006,610	1,097,284,734,056	209,954,272,554
일반회계	1,229,922,664,171	1,284,135,021,470	1,081,354,786,506	202,780,234,964
특별회계	24,150,751,860	23,103,985,140	15,929,947,550	7,174,037,590

회계별	현연도 채무상환	다음연도 이월액(D)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0	32,195,077,540	31,687,787,150	0	25,947,738,073	120,123,669,791
일반회계	0	28,235,629,290	28,851,299,160	0	25,796,518,445	119,896,788,069
특별회계	0	3,959,448,250	2,836,487,990	0	151,219,628	226,881,722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307,239,006,610원으로 예산현액 1,254,073,416,031원보다 53,165,590,579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3.94%인 1,097,284,734,056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209,954,272,554원이다.
- 이중 명시이월비 32,195,077,540원, 사고이월비 31,687,787,150원, 보조금실제 반납금 25,947,738,073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0,123,669,791원이다.
-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세계잉여금은 209,954,272,554원임이 확인되었다.

(2) 일반회계

가. 세 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산액	1,229,922,664,171	1,313,135,146,760	1,284,135,021,470	1,364,182,170	27,635,943,120
결산확인액	1,229,922,664,171	1,313,135,146,760	1,284,135,021,470	1,364,182,170	27,635,943,120
차 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1,284,135,021,470원은 예산현액의 104.41%로서 54,212,357,299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세수 증가 및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에 기인한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의 대사

(단위 : 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284,135,021,470	1,284,135,021,470	0

-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B/A)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 (C/B)	징수결정 불납결손액 (D/B)
2022년	1,229,922,664,171	1,313,135,146,760	1,284,135,021,470	1,364,182,170	106.77	97.79	0.10
2021년	1,161,730,888,560	1,212,104,845,997	1,185,123,183,917	1,466,930,450	104.34	97.77	0.12
증감	68,191,775,611	101,030,300,763	99,011,837,553	△102,748,280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세수 증가 및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로 인한 것이며, 전년도 수납액 1,185,123,183,917원보다 99,011,837,553원이 더 수납되었다.
- 불납결손의 주된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778,599,870원, 무재산 572,043,690원 등이다.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 = B-C-D)
총 계		1,229,922,664,171	1,313,135,146,760	1,284,135,021,470	1,364,182,170	27,635,943,120
지방세		119,601,542,000	131,053,781,820	129,659,950,040	103,120,450	1,290,711,330
세 외 수 입	소 계	58,508,409,000	95,192,061,571	67,585,768,061	1,261,061,720	26,345,231,790
	경상적세입	39,059,294,000	43,017,817,421	42,487,872,671	0	529,944,750
	임시적세입	15,595,439,000	39,616,508,900	18,353,464,610	1,261,061,720	20,001,982,570
	지방행제재 ·부과금	3,853,676,000	12,557,735,250	6,744,430,780	0	5,813,304,470
지방교부세		33,724,000,000	38,875,422,890	38,875,422,890	0	0
조정교부금등		254,690,867,000	283,167,067,630	283,167,067,630	0	0
보조금등		579,872,108,000	579,872,091,720	579,872,091,720	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83,525,738,171	184,974,721,129	184,974,721,129	0	0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입의 10.10%인 129,659,950,040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5.26%인 67,585,768,061원이 수납되었다.
- 지방교부세는 3.03%인 38,875,422,890원, 조정교부금 등은 22.05%인 283,167,067,630원, 보조금 등은 45.16%인 579,872,091,720원이 수납되었다.
-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인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체 세입의 14.40%인 184,974,721,129원이 수납되었다.

나. 세 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결산액	1,155,314,052,000	1,229,922,664,171	1,081,354,786,506	57,086,928,450	91,480,949,215
결산확인액	1,155,314,052,000	1,229,922,664,171	1,081,354,786,506	57,086,928,450	91,480,949,215
차 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1,155,314,052,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74,608,612,171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229,922,664,171원임.
- 세출예산 전용액은 총 1,433,881,000원으로 전용의 내용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부족분 추가 제작 공급을 위한 예산 전용(289,480,000원), 코로나19 및 침수피해 복구 등 비상근무 발생에 따른 직원 초과근무시간 증가로 예산 확보를 위한 전용(276,000,000원) 등이 있으며 예산이용은 없었음.
- 조직개편에 따라 148,000,000원을 이체함.
- 예비비는 총 24,914,409,078원을 지출하였는데,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재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결정 하였다.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44%에 해당되는 91,480,949,215원이며, 불용액 발생 사유로는 부지매입 지연으로 인한 공사 미착공으로 동청사 건립 예산 불용 등이며, 이 중 보조금 반납금은 25,796,534,725원이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의 대사

(단위 : 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081,354,786,506	1,081,354,786,506	0

-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 산 현 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월액(E)	보조금 반납금(F)	집행잔액 (C-D-E-F)
합 계	1,155,314,052	74,608,612	1,229,922,664	1,081,354,786	57,086,928	25,796,535	65,684,414
일반공공행정	55,365,115	42,974,663	98,339,778	81,228,658	4,813,776	1,621,948	10,675,396
공공질서및안전	32,487,521	5,488	32,493,009	24,683,686	124,801	7,105	7,677,417
교 육	15,966,315	0	15,966,315	15,053,315	0	51,280	861,720
문 화 및 관 광	27,864,169	5,140,488	33,004,657	28,240,039	3,212,331	141,145	1,411,142
환 경	51,548,095	30,361	51,578,456	46,801,708	326,200	113,675	4,336,873
사 회 복 지	597,707,828	33,208,788	630,916,616	586,663,967	11,608,493	19,601,613	13,042,543
보 건	40,954,629	1,103,745	42,058,374	33,445,326	3,604,093	1,291,056	3,717,899
산업·중소기업 및 에 너 지	43,814,073	3,183,096	46,997,169	42,301,934	1,168,440	2,225,576	1,301,219
교 통 및 물 류	52,529,206	6,806,774	59,335,980	40,643,717	17,507,836	2	1,184,425
국토및지역개발	46,405,837	13,173,789	59,579,626	40,245,301	14,720,958	380,131	4,233,236
예 비 비	42,363,279	△31,018,580	11,344,699	0	0	0	11,344,699
기 타	148,307,985	0	148,307,985	142,047,135	0	363,004	5,897,846

- 세출예산현액 1,229,922,664천원에 대하여 1,081,354,786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7,086,928천원, 보조금반납금은 25,796,535천원이며, 65,684,414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다.
- 지출액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이며 총 지출액은 586,663,967천원, 노인·청소년 부문에서 가장 많이(197,267,458천원) 지출되었다.

(3) 특별회계

가. 세 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24,150,751,860	36,486,756,580	23,103,985,140	681,807,870	12,700,963,57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71,138,000	1,705,849,250	1,145,551,000	0	560,298,250
주 차 장 특 별 회 계	23,079,613,860	34,780,907,330	21,958,434,140	681,807,870	12,140,665,320
결산확인액	24,150,751,860	36,486,756,580	23,103,985,140	681,807,870	12,700,963,570
차 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23,103,985,140원은 예산현액의 95.67%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63.32%이다.
- 불납결손액은 681,807,870원으로서 이는 주로 소멸시효 완성에 기인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4.81%인 12,700,963,570원으로 주로 납세태만에 기인한 것이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의 대사

(단위 : 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23,103,985,140	23,103,985,140	0

- 각 특별회계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나. 세 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9,996,557,000	24,150,751,860	15,929,947,550	6,795,936,240	1,424,868,07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71,138,000	1,071,138,000	966,734,240	0	104,403,760
주 차 장 특 별 회 계	18,925,419,000	23,079,613,860	14,963,213,310	6,795,936,240	1,320,464,310
결산확인액	19,996,557,000	24,150,751,860	15,929,947,550	6,795,936,240	1,424,868,070
차 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19,996,557,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4,154,194,86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4,150,751,860원이고,
- 예산 이용·전용은 없었으며, 이체 및 예비비 지출도 없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의 대사

(단위 : 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5,929,947,550	15,929,947,550	0

- 각 특별회계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4)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 2022회계연도의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

(단위 : 원)

구 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합 계		32,195,077,540		31,687,787,150
일반회계	대학동 창업공간 추가 조성을 위한 공사비 이월 외 52건	28,235,629,290	생활권역별 대표상귀 조성 사업 외 56건	28,851,299,160
주 차 장 특별회계	상도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건설 1건	3,959,448,250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운영 (주차장) 외 1건	2,836,487,990

○ 검사결과 명시이월액은 32,195,077,54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1,687,787,150원이다.

3. 기금의 결산

○ 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기 금 현 황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63,893,174,745	15,790,703,467	31,761,811,942	15,971,108,475	79,683,878,21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689,972,480	△1,933,009,365	799,085,635	2,732,095,000	756,963,11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9,930,765,636	5,877,590,043	5,877,590,043		25,808,355,679
중소기업육성기금	4,308,173,553	1,248,405,476	5,604,036,669	4,355,631,193	5,556,579,029
남북교류협력기금	102,371,690	104,164,037	104,164,037		206,535,727
자 활 기 금	1,523,242,865	7,028,746	147,028,746	140,000,000	1,530,271,611
양 성 평 등 기 금	1,031,139,546	8,560,918	26,600,918	18,040,000	1,039,700,464
노인회관건립기금	5,786,154,759	3,246,995,444	4,835,827,254	1,588,831,810	9,033,150,203
노인요양원건립기금	502,414,790	13,441,995	13,441,995		515,856,785
체 육 진 흥 기 금	447,444,125	△165,049,718	11,000,842	176,050,560	282,394,407
환경공무원자녀 학자금여금기금	770,445,533	30,568,740	63,704,340	33,135,600	801,014,273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	17,927,455,614	8,370,701,960	8,507,640,960	136,939,000	26,298,157,574
재 난 관 리 기 금	5,173,565,476	△873,444,612	4,556,089,450	5,429,534,062	4,300,120,864
옥외광고발전기금	392,311,334	198,479,255	215,254,505	16,775,250	590,790,589
도로굴착복구기금	2,776,541,676	△292,460,230	915,609,970	1,208,070,200	2,484,081,446
식 품 진 흥 기 금	531,175,668	△51,269,222	84,736,578	136,005,800	479,906,446

- 2022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63,893,174,745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31,761,811,942원을 더하고 사용액 15,971,108,475원을 공제한 79,683,878,212원이다.
-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년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19,802,937,186	22,366,742,849	34,746,683,985	49,079,772,103	63,893,174,745	34.0
증	조성액	6,785,478,163	16,865,645,956	25,090,607,618	23,458,406,910	31,761,811,942	47.1
감	사용액	4,221,672,500	4,485,704,820	10,757,519,500	8,645,004,268	15,971,108,475	39.5
당해연도말 조성액		22,366,742,849	34,746,683,985	49,079,772,103	63,893,174,745	79,683,878,212	37.4

- 검사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15개 기금의 현연도말 현재액은 79,683,878,212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15,790,703,467원이 증가한 것이다.

4. 재무제표의 결산

(1) 총괄현황(일반·특별회계·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결과		
	자산(A+B)	부채(A)	순자산(B)	비용(A)	수익(B)	운영결과(A-B)
2022년	2,453,195	48,650	2,404,545	1,025,200	1,096,597	(71,397)
2021년	2,369,575	36,788	2,332,787	945,160	1,036,088	(90,928)
증 감	83,620	11,862	71,758	80,040	60,509	19,531

(2) 재정상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유 동 자 산	336,124	13.70	293,591	12.39	42,533	14.49
투 자 자 산	14,929	0.61	13,653	0.58	1,276	9.35
일반유형자산	232,199	9.46	233,197	9.83	(998)	(0.43)
주민편의시설	465,841	18.99	444,477	18.76	21,364	4.81
사회기반시설	1,391,158	56.71	1,372,860	57.94	18,298	1.33
기타비유동자산	12,944	0.53	11,797	0.50	1,147	9.72
자 산 총 계	2,453,195	100.00	2,369,575	100.00	83,620	3.53
유 동 부 채	28,264	58.10	20,727	56.34	7,537	36.36
장기차입부채	-	-	-	-	-	-
기타비유동부채	20,386	41.90	16,061	43.66	4,325	26.92
부 채 총 계	48,650	100.00	36,788	100.00	11,862	32.24
고정순자산	2,100,363	87.35	2,060,212	88.32	40,151	1.95
특정순자산	92,112	3.83	71,301	3.05	20,811	29.19
일반순자산	212,070	8.82	201,274	8.63	10,796	5.36
순자산총계	2,404,545	100.00	2,332,787	100.00	71,758	3.08
부채 및 순자산 총계	2,453,195	-	2,369,575	-	83,620	3.53

- 2022회계연도 말 관악구의 총자산은 2,453,19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3,620백만원 (3.53%)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전년대비 재정자금 등 유동자산 42,533백만원 (14.49%) 증가와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신축 등 주민편의시설자산의 21,364백만원(4.81%) 증가로 인한 것이다.
- 반면 2022회계연도 말 관악구의 총부채는 48,65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862백만원 (32.24%)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일반미지급금 등 유동부채의 7,537백만원 (36.36%) 증가 등으로 인한 것이다.

(3) 재정운영

가. 성질별 재정운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인 건 비	174,933	17.06	167,413	17.71	7,520	4.49
운 영 비	140,420	13.70	132,890	14.06	7,530	5.67
정부간이전비용	20,509	2.00	15,500	1.64	5,009	32.32
민간등이전비용	659,432	64.32	610,159	64.56	49,273	8.08
기타비용	29,906	2.92	19,198	2.03	10,708	55.78
비 용 총 계	1,025,200	100.00	945,160	100.00	80,040	8.47
자체조달수익	207,404	18.92	181,945	17.56	25,459	13.99
정부간이전수익	886,528	80.84	853,522	82.38	33,006	3.87
기 타 수 익	2,665	0.24	621	0.06	2,044	329.15
수 익 총 계	1,096,597	100.00	1,036,088	100.00	60,509	5.84
재정운영결과	(71,397)	-	(90,928)	-	19,531	(21.48)

- 2022회계연도 말 관악구의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인건비 174,933백만원 (17.06%), 운영비 140,420백만원(13.70%), 정부간이전비용 20,509백만원(2.00%), 민간 등 이전비용 659,432백만원(64.32%), 기타비용 29,906백만원(2.9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반면 2022회계연도 말 관악구의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207,404백만원(18.92%)이고, 정부간이전수익 886,528백만원(80.84%), 기타수익 2,665백만원(0.24%)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 비용은 1,025,200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80,040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민간등이전비용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수익은 1,096,597백만원이며 이 중 자체조달 수익이 207,404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5,45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지방세 수익 증가에 의한 것이고, 중앙정부(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은 886,528 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3,00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국시비보조금 등 정부간이전수익 증가에 의한 것이다.
-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는 △71,397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9,531백만원 이익규모가 감소되었다.

나. 기능별 재정운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I.사업순원가	892,388	555,901	336,487	-	336,487	825,785	592,645	233,140	-	233,140
II.관리운영비	-	-	134,764	(22,973)	111,791	-	-	122,574	(14,898)	107,676
III.비배분비용	-	-	21,079	(58)	21,021	-	-	11,699	-	11,699
IV.비배분수익	-	-	39,972	(58)	39,914	-	-	23,350	-	23,350
V.재정운영순원가 (I+II+III-IV)	-	-	452,358	(22,973)	429,385	-	-	344,063	(14,898)	329,165
VI.일반수익	-	-	523,755	(22,973)	500,782	-	-	434,991	(14,898)	420,093
VII.재정운영결과 (V-VI)	-	-	(71,397)	-	(71,397)	-	-	(90,928)	-	(90,928)

- 2022회계연도 관악구의 사업순원가는 336,487백만원이고 관리운영비 111,791백만원, 비배분비용 21,021백만원 및 비배분수익 39,914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429,385백만원이다.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500,782백만원을 차감한 2022회계연도 관악구의 재정운영결과는 △71,397백만원이다.

(4) 순자산변동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계
I.기초순자산	2,168,341	92,330	72,115	2,332,786	2,067,691	93,723	57,902	2,219,316
II.재정운영결과	(46,128)	(2,812)	(22,457)	(71,397)	(76,710)	3	(14,221)	(90,928)
III.순자산의증가	341	21	-	362	30,189	-	-	30,189
IV.순자산의감소	-	-	-	-	6,249	1,390	7	7,646
5.기말순자산 (I-II+III-IV)	2,214,810	95,163	94,572	2,404,545	2,168,341	92,330	72,116	2,332,787

- 2022회계연도 관악구의 기초순자산은 2,332,786백만원이고 재정운영결과 △71,397백만원, 순자산의 증가 362백만원을 가감한 기말순자산은 2,404,545백만원이다.

(5) 채 권

채 권 현 황

(단위 : 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 발생액(B)	당해연도 소멸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D=A+B-C)
합 계	16,150,661,205	6,710,722,740	5,676,079,935	17,185,304,010
일반회계	7,100,229,735	630,305,210	1,266,115,180	6,464,419,765
기 금	9,050,431,470	6,080,417,530	4,409,964,755	10,720,884,245

-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185,304,010원으로 확인되었다.

5. 성과보고서

- 2022년 성과보고서는 47개의 정책사업 목표의 141개 지표 중 초과달성 28개, 달성 80개, 미달성 33개로 성과를 달성하였다.
- 관악구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은 100%를 달성하였으며, 평균 76.6% 달성률을 보였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수(B)	미달성	달성률 (B/A)
계	9	47	141	108	33	76.6%
감 사 담 당 관	1	1	3	3	0	100.0%
기 획 경 제 국	1	7	21	17	4	81.0%
행 정 혁 신 국	1	5	16	11	5	68.8%
복 지 가 족 국	1	9	26	17	9	65.4%
청 년 문 화 국	1	7	18	14	4	77.8%
청 정 도 시 국	1	6	19	17	2	89.5%
안전건설교통국	1	6	19	13	6	68.4%
보 건 소	1	5	17	14	3	82.4%
의 회 사 무 국	1	1	2	2	0	100.0%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공유재산

○ 2022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가 액	감 소 액	
합 계	2,075,592,281,597	84,868,014,926	12,358,825,010	2,148,101,471,513
행정재산	2,048,095,494,807	26,106,804,310	196,236,410	2,074,006,062,707
공용재산	367,150,123,753	18,311,379,720	130,000,000	385,331,503,473
공공용재산	1,677,919,531,054	7,795,424,590	66,236,410	1,685,648,719,234
보존용재산	3,025,840,000	-	-	3,025,840,000
일반재산	27,496,786,790	38,060,000	12,162,588,600	15,372,258,190
건설중인재산	-	58,723,150,616	-	58,723,150,616

○ 검사결과 2022회계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655,114.85㎡에 1,487,034,368,934원과 건물 201,772.38㎡에 303,010,394,964원, 입목축 303,815목 6,035,916,154원, 공작물 21,182건 281,316,560,065원, 무체재산 127건 1,327,856,230원, 유가증권 3건 1,210,000,000원, 용익물권 67건 9,231,194,550원, 회원권 7건 212,030,000원, 건설중인재산 27건 58,723,150,616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재산액은 2,148,101,471,513원이다.

(2) 물 품

○ 2022연도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수량 : 개, 금액 : 원)

구 분	전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내역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취 득	처 분	
수 량	1,542	119	127	1,534
금 액	14,126,797,678	1,523,408,839	1,637,073,321	14,013,133,196

○ 검사결과 2022회계연도말 보유하고 있는 행정용 정수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 14,126,797,678원에 대해 당해연도 신규취득 등으로 1,523,408,839원이 증가하고, 불용물품의 처분 등으로 1,637,073,321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4,013,133,196원이다.

Ⅲ . 개선 및 권고사항

1. 세입 부분

코로나19와 금리인상, 수입물가 상승 등 국내외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입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2021회계연도보다 93,727,116천원을 더 징수하고, 미수납액 중 2,045,990천원을 결손처분하여 재정여건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 세입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세수입 확보의 적정성 검토

(단위 : %, 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비율(%)	
						C/A	C/B
합 계	1,254,073,416,031	1,349,621,903,340	1,307,239,006,610	2,045,990,045	40,336,906,690	104.24	96.86
일반회계	1,229,922,664,171	1,313,135,146,760	1,284,135,021,470	1,364,182,170	27,635,943,120	104.41	97.79
특별회계	24,150,751,860	36,486,756,580	23,103,985,140	681,807,870	12,700,963,570	95.67	63.32
의료급여 기금	1,071,138,000	1,705,849,250	1,145,551,000		560,298,250	106.95	67.15
주차장	23,079,613,860	34,780,907,330	21,958,434,140	681,807,870	12,140,665,320	95.14	63.13

세입예산편성의 합리성 면에서 볼 때 세입예산 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104.24%로서, 보수적인 예산 편성으로 실제 수납액이 세입예산 현액보다 많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 우리 구 자주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취득세과의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재산세 4,619백만원, 지방소비세 5,738백만원, 부동산교부세 5,133백만원과 조정교부금 28,477백만원,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891백만원 등이 발생하여 일반회계 초과 수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시지가의 증감율, 비과세 감면, 세율 등 지방세법의 개정과 건축허가 사항, 지난연도 수입 징수예상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수입 확보 측면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6.86%로 전년도(96.71%)에 비하여 소폭 증가하였으나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세외수입의 체납분인 지난년도 수입의 수납률(일반회계 15.61%, 특별회계 6.8%)이 저조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체납세액의 징수강화 등을 통하여 세수입 확보의 적정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나. 세입의 편성비율

(단위 : %, 원)

구 분	예산현액 (B)	비율 (B/A)	징수 결정액 (C)	비율 (C/B)	실제 수납액 (D)	비율 (D/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일반회계 계(A)	1,229,922,664,171	100	1,313,135,146,760	106.77	1,284,135,021,470	97.79	1,364,182,170	27,635,943,120
지방세	119,601,542,000	9.72	131,053,781,820	109.58	129,659,950,040	98.94	103,120,450	1,290,711,330
세외수입	58,508,409,000	4.76	95,192,061,571	162.70	67,585,768,061	71.00	1,261,061,720	26,345,231,790
지방교부세	33,724,000,000	2.74	38,875,422,890	115.28	38,875,422,890	100		
조정교부금등	254,690,867,000	20.71	283,167,067,630	111.18	283,167,067,630	100		
보조금	579,872,108,000	47.15	579,872,091,720	100.00	579,872,091,720	1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83,525,738,171	14.92	184,974,721,129	100.79	184,974,721,129	100		
특별회계 계(A)	24,150,751,860	100	36,486,756,580	151.08	23,103,985,140	63.32	681,807,870	12,700,963,570
의료급여 기금	1,071,138,000	4.44	1,705,849,250	159.26	1,145,551,000	67.15		560,298,250
주차장	23,079,613,860	95.56	34,780,907,330	150.70	21,958,434,140	63.13	681,807,870	12,140,665,320

세입의 편성비율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편성비율이 70.6%로 의존 재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편성비율은 4.76%로 자체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71%로 징수율이 저조한 편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편성 비율이 95.56%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수납률은 63.13%로 저조합니다.

그러므로,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미수납액 비율이 높은 일반회계 세외수입과 주차장특별회계 수입 분야에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편성에 있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비율이 일반회계 106.77%, 특별회계 151.0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외수입 162.7%, 특별회계의 의료급여 부문 159.26%, 주차장 부문 150.70% 등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징수 전망, 사업계획, 징수결정액 추이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추계에 있어 합리성과 적정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과태료 등 세외수입 예산편성시 일부 부서에서는 비현실적인 추정치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거나, 기타이자수입·그외수입 등 일부 과목에 대하여는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 또는 담당자의 관심 부족으로 전년도 예산 편성 자료만을 참고하여 당초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결산과정에서 세입 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건전한 예산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에는 과거의 부과·징수 현황을 평균하여 산출하는 등 정확한 세외수입 추계분석을 통한 실제 징수결정액에 근접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미수납액 징수를 제고

2022년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원)

구 분	미수납액	무재산	납세태만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국외이주	기타
		행방불명	폐업또는부도	소송계류	자금압박	납기미도래
합 계	40,336,906,690	4,078,655,750	31,450,777,890		10,587,920	123,484,950
		1,420,409,290	1,740,083,500	991,023,830	20,114,010	501,769,550
일반회계	27,635,943,120	3,697,750,890	19,225,179,180		10,587,920	123,484,950
		1,420,409,290	1,740,083,500	991,023,830	20,114,010	407,309,550
특별회계	12,700,963,570	380,904,860	12,225,598,710			
						94,460,000
의로규여 기금	560,298,250	380,904,860	179,393,390			
주차장	12,140,665,320		12,046,205,320			
						94,460,000

미수납액은 총 40,336,906,690원이며, 징수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계속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미수납액의 원인별 사유 중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 또는 부도, 국외이주의 경우 징수에 대한 비용과 실적을 비교 검토하여 소멸시효완성 전이라도 결손처분하고, 사후 관리 절차를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면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 즉시 징수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건전재정운영이나 징수 관리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합니다.

미수납액 사유 중 기타는 분류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며, 납기미도래는 연도 말에 부과하여 다음연도 1월에 납부기한이 도래되는 건들로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볼 때는 미수납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의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 대비 2.99% 증가되었으며, 현연도 부과 분은 주관부서에서 징수하고, 건축과를 제외한 모든 부서는 체납분을 38세금 징수과로 이관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38,590,913,304	40,820,806,741	41,603,910,041	39,167,151,460	40,336,906,690
일반회계	24,721,825,810	25,536,557,110	26,656,162,310	25,514,731,630	27,635,943,120
특별회계	13,869,087,494	15,284,249,631	14,947,747,731	13,652,419,830	12,700,963,570
의료급여기금	485,588,700	536,445,500	649,088,650	577,912,180	560,298,250
주차장	13,383,498,794	14,747,804,131	14,298,659,081	13,074,507,650	12,140,665,320

일반적으로 징수의 난이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연도 부과분이 징수하기 제일 수월하고, 체납 1년차, 체납 2년차, 체납 3년차로 갈수록 징수가 어려우므로 현연도분 부과 부서에서는 징수율을 최대한 높여 미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38세금징수과로 이관한 후에도 부서 간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체납분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라. 세입금 결손처분

2022년도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원)

구 분	불납결손액	사 유 별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부족
합 계	2,045,990,040	1,460,407,740	9,749,170	572,043,690	3,789,440
일반회계	1,364,182,170	778,599,870	9,749,170	572,043,690	3,789,440
특별회계	681,807,870	681,807,870	-	-	-
의료급여기금	-	-	-	-	-
주차장	681,807,870	681,807,870	-	-	-

불납결손액 총액 2,045,990,040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대부분이 지난연도수입(체납분) 중에서 처분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소멸시효완성 57.07%, 무재산이 41.93%로 비중이 크며, 특별회계의 경우 모두 소멸시효완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지난연도수입 중 소멸시효 완성된 18,762,000원을 소액이라는 이유로 결손처분하지 않고 미수납액으로 정리한 바, 이는 업무처리의 미숙 내지는 태만으로 보여 집니다. 향후에는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결손처분 할 것을 권고합니다.

연도별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1,597,875,000	2,085,329,541	828,969,850	2,177,093,840	2,045,990,040
일반회계	1,345,695,050	2,036,185,840	806,854,780	1,466,930,450	1,364,182,170
특별회계	252,179,950	49,143,701	22,115,070	710,163,390	681,807,870
의료급여기금	22,684,150	39,360,620	18,157,670	98,904,360	-
주차장	229,495,800	9,783,081	3,957,400	611,259,030	681,807,870

결손처분액은 2021년도 대비 소폭 감소(6.02%)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부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한 경우 결손처분 후에도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년 2회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재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손처분을 취소 하고 징수조치를 이행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8세금징수과의 자료에 의하면 결손처분 후 2022년도 징수실적으로 지방세 551건 25,928,640원, 세외수입 134건 50,403,390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 세입금 환급

세입금환급은 모든 세입금의 징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유는 행정기관착오, 납세자권리구제, 납세자착오, 차량미등기, 법령개정, 그리고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기타로 구분됩니다. 세입금환급은 금액의 크고 작음 보다 행정의 신뢰도 저하와 행정력 낭비라는 측면에서 최소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세입금 환급 현황

(단위 : 원)

구 분	환급액	사 유 별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	법령 개정	기타
합 계	4,145,322,250	49,178,090	35,067,030	39,633,010	50,780,000	425,647,780	3,545,016,340
일반회계	4,107,712,790	49,178,090	33,382,070	39,633,010	50,780,000	425,647,780	3,509,091,840
특별회계	37,609,460	-	1,684,960	-	-	-	35,924,500
의료급여기금	1,117,610	-	-	-	-	-	1,117,610
주차장	36,491,850	-	1,684,960	-	-	-	34,806,890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타 사유는 환급액 전체의 85.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보조금 시달 기관의 반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도별 세입금 환급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687,791,740	279,211,350	1,250,885,320	1,008,362,400	4,145,322,250
일반회계	624,208,620	183,563,650	1,221,467,790	980,943,640	4,107,712,790
주차장특별회계	63,583,120	95,647,700	29,417,530	27,418,760	37,609,460

상기 표와 같이 과오납 반환금은 2021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회계의 보조금 환수액 발생 및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중단 및 취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바.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에 그외수입은 1.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수입.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4. 지역상생발전기금(재정지원계정)지원금 등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그외수입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그외수입	3,105,302,760	4,524,838,490	6,440,653,530	5,882,061,030	5,203,980,320
증감율(%)	19.98	45.71	42.34	△8.67	△11.53

2022년도 그외수입은 2021년 대비 11.53%감소하였고, 2020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외수입”은 세입예산 과목 구분 및 설정과 같이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결산과정에서 세입과목을 신설하여 징수결정 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매년 세입액이 발생할 경우 그 실적을 3~5년간 평균액 산출 또는 시계열 추계하여 예산액 및 예산현액을 편성하기 바라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을 경우 이후 그외수입 세입액이 발생할 경우 하반기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하여 예산액 및 예산현액 편성할 것을 권합니다.

사.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위법행위 상태를 위법 이전의 적법한 상태로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인 부담을 주어 원상회복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며,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제5항에는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 경우 연 1회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입법 취지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위법한 상태를 그 이전의 적법 상태로 회복하도록 강제하여 위법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며,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는 감면 등의 혜택없이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강화하고 있음에도 2021회계연도까지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2022회계연도에는 전년대비 28.08%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상태의 개선이 없어 반복 부과할 경우 3년차부터는 년 2회 부과하도록 하고, 체납시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준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할 것을 권합니다.

연도별 이행강제금 현황(일반회계)

(단위 :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행강제금	3,466,583,850	4,655,260,930	6,406,356,230	6,826,553,440	4,909,383,400
증감율(%)	9.46	34.29	37.62	6.56	△28.08

우리 구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등 부서에서 부과하고 있으며, 2022년의 경우 2021년 대비 1,917,170,040원이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과 2019년도 보다는 증가하여, 위법한 상태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과태료

과태료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며, 형벌이 아니므로 그 부과절차도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과태료 현황(일반회계)

(단위 :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과태료	2,226,809,090	2,708,308,870	2,524,971,240	1,749,933,540	1,476,488,450
증감율(%)	△11.24	21.62	△6.77	△30.69	△15.63

2022년도 과태료는 전년 대비 15.63% 감소하였으며, 2019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태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벌칙적인 것이어서 대부분 납부에 저항감이 있으므로 징수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부과 과정에서 개별 법령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고,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가산금 부과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징수하기 바라며,

부과 과정에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20% 이내 경감된다는 점, 체납 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점 등을 함께 고지하여 징수율 제고에 활용하고, 체납액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매년 산정하여 징수결정액을 변경 관리하기 바랍니다.

자. 순세계잉여금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74,590,135	75,573,283	66,600,080	90,195,624	120,123,670
일반회계	59,383,749	67,198,472	62,414,713	89,359,407	119,896,788
특별회계	15,206,386	8,374,811	4,185,367	836,217	226,882

총 세입금액에서 총 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결산상 잉여금이라 하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실제반납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20,123,670천원이며,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30,537,381천원 증가, 특별회계는 609,335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74,414천원, 주차장특별회계 152,468천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 교부 기관에 보조금 집행잔액 등과 같이 반납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58,61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추가 사용 가능한 순세계잉여금은 61,286,788천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48,515천원 계상하였으므로 실제 사용 가능한 순세계잉여금은 103,952천원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반영을 낮춤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초예산에 반영할 순세계잉여금은 추계 방법을 시계열 추계보다 각 부서별로 세목별 집행잔액을 단순추계방식으로 세심하게 추계하고, 추계된 항목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지출을 통제하여 추계된 금액이 지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2. 세출 부문

가. 회계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2022년도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보조금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총 계	1,254,073,416,031	66,958,062,932	17,763,565,797		1,770,532,500
			1,006,728,350	34,972,537,285	11,444,699,000
일반회계	1,229,922,664,171	65,684,414,490	17,656,372,235		1,770,532,500
			973,662,250	33,939,148,505	11,344,699,000
특별회계	24,150,751,860	1,273,648,442	107,193,562		
			33,066,100	1,033,388,780	100,000,000
의료급여기금	1,071,138,000	1,180			
				1,180	
주차장	23,079,613,860	1,273,647,262	107,193,562		
			33,066,100	1,033,387,600	100,000,000

집행잔액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대비 94.66%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34%, 66,958,062,932원이며, 집행잔액 총액 대비 보조금정산잔액 26.53%, 낙찰차액 1.51%, 지출잔액 52.23%,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2.64%, 예비비 17.09%로 나타나 지출잔액, 보조금정산잔액, 예비비가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액은 예산집행계획 중 의무절감계획에 의하여 배정하지 않은 금액이 해당되나 2022년도에는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신속집행 계획을 시행함에 따라 의무절감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부서의 예산절감액이 없는 것입니다.

집행잔액과 초과세입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되어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할 경우 세출예산을 과다편성 하였거나 사업성과 저하 등 부정적 측면도 있으므로 적정한 금액이 편성되어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 성과가 나타나도록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연도별 집행잔액 발생 현황(일반회계)

(단위 :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일반회계	26,927,718,740	40,871,231,913	65,967,098,502	65,684,414,490	
증감율(%)	△ 36.32	51.78	61.40	△ 0.43	

연도별 집행잔액 발생 현황(일반회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도 대비 0.43% 감소 하였으나 2019년과 2020년 대비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 영향으로 계획한 사업과 각종 행사가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한다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나. 집행잔액(30% 이상) 과다 발생

계획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최소 예산으로 최대로 효과를 달성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이므로 적극 장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잔액이 과다 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추후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도별집행잔액(30%이상) 과다발생

(단위 : 원)

구분	부서 수	세부사업 수	집행잔액	비고
2022년	32	109	15,031,310,728	
2021년	30	121	10,225,849,100	

2022년도는 2021년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라는 특수 사정에 의하여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 등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어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30%이상 과다 발생은 32개 부서, 109개 세부사업, 15,031,310,728원으로 나타나 2021년 대비 47%, 4,805,461,628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성과를 심도 있게 분석·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이 계상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회계연도 내에 사장되는 예산이 최소화 하도록 감추경하여 운영할 것을 권합니다.

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예산은 편성 할 때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추계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원칙으로 인한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는 전용 근거와,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전용 제한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전용과 변경의 절차, 범위, 제한 등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용제한 사항으로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기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 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 할 수 없으며,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 불가, 시설비 및 부대비(401)의 경우 동일 편성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다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전용 불가.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 내 통계목간 상호 변경사용은 가능합니다.

예산은 관악구청장의 권한 하에서 편성하고, 관악구의회 심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되므로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에 의하여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후에는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가급적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때를 전·후한 1개월 정도 기간에는 전용과 변경, 예비비 지출 요인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심의 확정 후 집행할 것을 권합니다.

예산의 전용과 변경 현황(일반회계)

(단위 : 원)

연도	전 용		변 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년	30	356,970,000	40	546,159,000
2019년	38	507,218,000	42	2,087,643,000
2020년	44	1,964,129,000	71	1,168,215,000
2021년	38	747,075,000	32	2,712,295,000
2022년	42	1,433,881,000	41	1,104,379,000

2021년 대비 전용은 686,806천원 증가하였고, 변경은 1,607,916천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라는 특수 사정에 의하여 예상하지 못한 지출요인이 다수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라. 국·시비 보조금에 관한 사항

2022년 국·시비 보조금 현황(당해)

(단위 : 원)

구분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	계	720,562,829,000	720,562,812,720	649,607,462,314	29,955,728,910	40,999,621,496
일반회계	국비	334,416,698,000	334,416,695,002	318,035,293,871	6,383,569,150	9,997,831,981
	시비	245,455,410,000	245,455,396,718	216,485,377,762	14,265,144,170	14,704,874,786
	구비	135,200,583,000	135,200,583,000	113,751,190,591	5,347,567,340	16,101,825,06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비	490,135,000	490,135,000	437,933,710	0	52,201,290
	시비	490,135,000	490,135,000	437,933,710	0	52,201,290
주차장 특별회계	시비	1,301,068,000	1,301,068,000	254,250,952	1,000,000,000	46,817,048
	구비	3,208,800,000	3,208,800,000	205,481,718	2,959,448,250	43,870,032

1) 보조금 총사업비(예산액)와 보조금수령액의 차액 발생

국·시비 보조금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시달되며, 사업비는 전년도에 당초예산 편성 당시 시달된 가내시액 통보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 연도에 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교부되면 간주처리 후 집행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총사업비(예산액) 금액과 보조금수령액은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예산 통계 처리 방법”에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세입·세출은 반드시 일치하도록 편성하고, 광역과 기초단체는 예산결정권과 의결권이 상호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이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으나 상호 협조하에 최대한 일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보조금 총사업비(예산액)와 보조금수령액과의 교부차액은 천원단위로 편성되는 예산액과 10원단위로 시달되는 수령액과의 차액이며, 그 금액은 일반회계 16,280원으로서 이는 세출결산서상 ㉠란의 보조금반납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허수예산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 계산 시 공제하는 보조금실제반납금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보조금 교부차액만큼 예산액(총사업비)을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할 것을 권합니다.

2) 보조금 반납액 과대계상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서남권창업허브시설조성 연구용역비 시비보조금을 집행 후 집행잔액 44,790,000원을 반납이자 3,491,230원과 함께 2022.10.31.에 반납하여, 2023년도에는 반납할 금액이 없음에도 보조금반납액에 44,79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보조금사업 예산은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과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정산결과를 보조금 시달 기관에 통보하고, 발급되는 집행잔액 반납 고지서에 의하여 그 다음연도 예산(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반납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결산검사 자료에 의하면 미반납액은 일반회계 국비보조금 87,539,024원, 시비보조금 640,534,903원으로 총 728,073,927원입니다. 그 사유를 보면 2023년도 반납 예정, 반납고지서 미발행, 반납요구 금액이 집행잔액보다 크거나 적음 등이며, 일부 부서에서는

2023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하였으며, 그 외 부서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할 예정입니다.

4) 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지방재정법」 제6조(회계연도) 및 「지방회계법」 제6조(회계연도)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라고 정하고,

「지방회계법」 제7조(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서 규정을 두어 출납사무의 폐쇄기한을 다음회계연도 1월 20일까지로 정하여 수입 또는 지출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조(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민간위탁사업의 비용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등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령한 국·시비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등에 전액 교부한 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집행잔액이 반납되면 집행잔액으로 정리 하나 1월 20일 이후에 집행잔액이 반납되면 보조금 집행 현황의 집행잔액으로 정리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 세입 예산의 “그외수입” 으로 세입조치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에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편성하여 반납하게 됩니다.

또 지방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 시기가 현행과 같이 다음회계연도 1월20일 이후 반납하게 되면 보조금 집행 현황의 집행잔액은 없는데 반납금이 발생하는 모순된 사례가 매년 반복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회계연도에는 세출예산 지출액이 과다 계상되고, 보조금 정산이 이루어지는 다음 회계연도에는 세입 예산이 과다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결산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없어 해당 사업 예산이 과다 편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이전 등 지방보조금을 수령한 단체 등에게는 12월 31일까지 수령한 보조금을 정산하고, 출납사무 폐쇄기한인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여 법정기한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할 것을 권고합니다. 만약 보조금 수령 단체의 사정으로 기한 내 정산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12월 31일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집행잔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보조금 관리(관련부서 간 합동 점검)

보조금은 국비, 시비, 구비의 분담비율에 맞게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분담비율에 맞지 않게 운영한 사례, 분담비율과 관계없는 보조금만의 사업과 구비 사업명이 동일할 경우 구비만 지출하고 보조금은 지출하지 않아 전액 집행잔액 처리한 사례, 분담비율과 관계없는 구비를 보조금 집행 현황 구비에 포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5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달된 국·시비 보조금의 목적과 분담비율에 맞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기획예산과, 재무과, 38세금징수과, 보조금 운영부서가 합동으로 매 분기 또는 상·하반기별로 보조금 예산상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또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4/4분기에는 증·감에 대한 정산 간주처리를 전체적으로 실시하여 나타낼 수 있는 허수예산을 최소화 하고, 앞에 설명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권합니다.

마. 이월비

1) 명시이월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악구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세), 특정목적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은 예산승인(예산안 의회 제출 후

교부된 사업비의 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건수
계	82,027,429,520	45,407,082,490	32,935,901,710	32,195,077,540	54
일반회계	78,027,429,520	45,325,978,990	32,895,349,960	28,235,629,290	53
특별회계	4,000,000,000	81,103,500	40,551,750	3,959,448,250	1

2022년도 명시이월 현황은 상기 표와 같으며,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보조금·특별교부금·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연말에 교부, 부지 매입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 사업 계획 변경 등이며,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23연도로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2항에는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대상으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등으로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에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사고이월(지방 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내용은 사고이월 가능 경우를 확대하여

당초에는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에 대하여만 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 사고이월의 경우를 확대하여 집행의 원활을 도모 하고, 세계잉여금의 감소를 피하도록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영공사 등의 경우에는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으면 공사비의 다른 부문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체로 하여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건수
계	113,013,575,080	76,588,407,790	55,041,687,640	31,687,787,150	59
일반회계	108,868,239,080	73,096,824,840	53,778,012,380	28,851,299,160	57
특별회계	4,145,336,000	3,491,582,950	1,263,675,260	2,836,487,990	2

2022년도 사고이월 현황은 상기 표와 같이 59개 세부사업에 31,687,787,150원이며, 이월 사유는 사업비가 연말에 확보되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움, 주민협의 및 사전 절차 이행 기간 소요, 준공기한 미도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중단 및 순연, 용역 기간 연장,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이며, 예산을 2023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예 비 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예비비 금액의 범위를 정하고,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재해·재난 예비비는 별도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2항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비비 지출 현황(일반회계)

(단위 :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건수	13	11	72	8	25
지출결정액	304,953,000	527,195,000	12,831,414,000	222,548,000	31,018,580,000
지출액	298,361,060	519,826,780	12,772,134,073	185,802,240	24,935,209,078
이월액					
집행잔액	6,591,940	7,368,220	59,279,927	36,745,760	6,083,370,922

2022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은 2021년도 대비 17건, 30,796,032,000원 증가되고 집행잔액이 6,083,370,922원으로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이 저해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24,706,000,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0,142,85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급 2,500,000,000을 지출결정하여 918,00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예비비의 지출 제한”을 보면 그 성격이나 제도의 취지라는 측면에서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하고,

내재적 제약으로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되며,

실정법상 제약(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으로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업무추진비, 보조금 등이 그 예로써 이들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사용승인요청 전에 실정법상 한계나 내재적 한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전용이나 변경 등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불가피한 경우에만 승인 요청하여 사용할 것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후한 1개월 정도 기간에는 예비비 사용보다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실정법상 한계나 내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과다하였고, 집행잔액도 6,083,370,922원으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건축 기본계획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2022년 2월 11일에 25,000,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음에도 사고이월하지 않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 시 지출사유와 지출금액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시고, 집행잔액이 발생 시 감추경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기 금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기금의 기본 원칙으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의 활용도·건전성 제고,”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 혁신”에 두고 있으며,

단일기금에 대한 구조화원칙으로 통합하지 않은 단일기금의 경우 하나의 목적사업이 존재하므로 ‘고유목적사업’ 과 ‘재무활동사업’의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하고, 지출이 없는 적립성기금 등은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운용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상황 변화에 의하여 변경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단,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는 사용 불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등)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유의사항으로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등 상환,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편성된 금액은 축소변경 불가(증액변경은 가능)하고, 업무추진비는 증액변경 불가(축소변경은 가능),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이와 관계없이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 가능하도록 하고,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을 초과변경 하는 경우 등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경우에는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 제한 없으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재난관리기금(「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재해구호기금(「재해구호법」 제14조)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에는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나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 동일 세부사업 내 총사업비 증액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는 경우, 전년도 결산에 따라 기금 예치금(예치금 회수)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는 변경내용, 금액규모,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단체장 결재로 변경할지 여부를 자율판단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총 15종의 기금 운용내역

(단위 : 원)

전년도 말 조성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 말 조성액	비고
	계	조성액	사용액		
63,893,174,745	95,654,986,687	31,761,811,942	15,971,108,475	79,683,878,212	

기금의 전체 규모는 전년도말 조성액 63,893,174,745원, 2022년도에 31,761,811,942원을 조성하고 15,971,108,475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5,790,703,467원이 증가한 79,683,878,212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기금의 경우 세입계획 서식에 “225-01 지난연도수입” 목을 신설하도록 권고한 바,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계획에 지난연도수입 과목을 신설하였으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결산시에야 비로소 지난연도수입 항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지난연도 수입 중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해야 할 730,900원을 2022년 12월 28일 결재를 받고도 이를 누락하였는바, 향후에는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공공예금이자수입(216-01) 현황

(단위 : 원)

종 류	수입계획 현액	실제수납액	초과세입	비율	비 고
합 계	1,112,990,000	1,674,867,745	561,877,745	50.4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0	48,081,635	48,081,635	1.48%	예탁금이자수입 으로 현액편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49,662,000	575,590,043	225,928,043	64.61%	
중소기업육성기금	135,031,000	128,293,518	△6,737,482	△4.99%	
남북교류협력기금	3,000,000	4,164,037	1,164,037	38.80%	
자활기금	23,728,000	38,240,342	14,512,342	61.16%	
양성평등기금	16,085,000	26,597,936	10,512,936	65.36%	
노인회관건립기금	93,576,000	121,396,254	27,820,254	29.73%	
노인요양원건립기금	7,922,000	13,441,995	5,519,995	69.68%	
체육진흥기금	6,980,000	10,227,872	3,247,872	46.53%	
환경공무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11,632,000	19,551,340	7,919,340	68.08%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	345,374,000	507,640,960	162,266,960	46.98%	
재난관리기금	68,000,000	91,507,810	23,507,810	34.57%	
옥외광고발전기금	3,000,000	9,342,015	6,342,015	211.40%	
도로굴착복구기금	40,000,000	68,281,410	28,281,410	70.70%	
식품진흥기금	9,000,000	12,510,578	3,510,578	39.01%	

상기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금 운용 공공예금이자수입 수입계획 현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정기예금 또는 공공예금으로 운용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예치 원금(평균잔액), 이자율, 예치기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수시로 은행과 협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 시키도록 하고, 그에 따라 수입계획도 변경하여 실제수납액과의 차이를 최소화 할 것을 권합니다.

5. 재무제표

가. 외부 검토인 검토 절차

관악구의 2022년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검토인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제5장 제2절 검토인의 선정 및 검토기준 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으며, 공인회계사의 검토업무를 위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60일 이내에 재무제표 등 결산에 관련된 서류를 검토인에게 제출하였고 검토인은 결산검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검토를 완료하였으므로 시기와 관련된 요건도 적정합니다. 따라서 검토인의 적격성 및 검토 절차상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 검토인의 검토 결과

검토인의 검토대상이 된 재무회계 결산서는 재무제표 등 결산에 관련된 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토인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관악구의 2022년도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 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검토인의 검토보고서상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출납 폐쇄기간 이후 결산 검사일까지 검토인에게 추가로 검토를 의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부록1 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점검한 결과 검토인의 검토의견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 검토인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검토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제5장 제3절 검토보고기준에 의하면 “검토인은 검토보고서와 별도의 문서로 재무제표의 검토업무 수행절차 및 검토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처리, 재무회계 제도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그 수정방안 및 개선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서는 재무제표에는 첨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인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 업무 수행절차 및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검토인은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문제점과 그 개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 보다 세밀한 예산편성의 필요

공무원연금부담금으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보수로 예산편성이 되어 지자체는 이를 결산 보정분개로 보정하였습니다(약 1.8억원). 향후 인력운영비 편성부서에서는 연금부담금을 보수가 아닌 적절한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운용수수료 지출분을 공무원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예산편성하여 퇴직금 전환금및예치금이 과대계상되어 이를 결산보정분개로 보정한 바, 퇴직연금 운용 부서에서는 수수료 납부시 이를 사무관리비 등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집행하여 당해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학자금예치금 회수예정액의 유동성 분류

지자체 복식부기 운영규정 상 학자금예치금은 장단기 구분 없이 장기로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공무원 학자금 용자규모가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매년 회수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기학자금예치금 계정이 없어 지자체는 이를 단기지방공공기관용자금으로 보정분개 처리한 바, 행안부 등에 건의하여 학자금예치금의 유동성 분류를 위한 계정과목 신설 건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검토인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재무회계 제도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그 수정방안 및 개선 대안을 적극 수렴하고 재무회계 처리의 적절성 및 재무회계 담당자의 회계처리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구청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제표 수정사항

검토인의 검토 및 결산검사 과정에서 일부 회계과목 분류의 오류가 발견되어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및 주석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재정운영표(성질별) 연금부담금 조정사항

(단위 : 원)

회계	회계과목	관리과목	수정전	수정후	차액
일반회계	급여	보수	82,534,346,090	82,355,356,700	△178,989,390
	복리후생비	공무원연금부담금	17,549,984,470	17,728,973,860	178,989,390

인력운영비(사회복지직-서울시순증)에서 연금부담금(304-01)을 편성하지 않아 보수(101-01)에서 연금부담금 178,989,390원을 납부하여 보수가 과다 계상되어 있어 결산보정분개를 통해 수정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편성부서에서는 연금부담금을 다른 예산과목에서 집행하여 보수가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성질별) 퇴직연금 조정사항

(단위 : 원)

회계	회계과목	관리과목	수정전	수정후	차액
일반회계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금전환금및예치금	17,846,051,546	17,844,292,536	△1,761,190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	7,594,839,551	7,596,600,741	1,761,190

퇴직연금 운용수수료를 1,761,190원을 공무원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에서 집행하여 과대 계상된 퇴직전환금및예치금을 결산보정분개를 통해 지급수수료로 수정하였습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수수료 납부시 사무관리비(201-01)로 집행하여 당해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성질별) 학자금위탁대여금 조정사항

(단위 : 원)

회계	회계과목	관리과목	수정전	수정후	차액
일반회계	장기대여금	학자금위탁대여금	5,471,372,515	5,470,584,515	△788,000
	위탁대행사업비	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	12,908,845,660	12,909,633,660	788,000
	단기대여금	단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0	275,330,000	275,330,000
	장기대여금	학자금위탁대여금	5,470,584,515	5,195,254,515	△275,330,000

학자금위탁대여금 운영수수료 788,000원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309-02)으로 집행하여 과대 계상된 학자금위탁대여금을 결산보정분개를 통해 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로 수정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편성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1)로 편성하여 추후 결산보정분개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학자금위탁대여금 중 2023년 회수예정액을 단기대여금(단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학자금 융자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매년 회수수입이 발생하여 학자금위탁 대여금의 단기항목 신설이 필요합니다.

채권 결산에 당해년도말 잔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에 이자가 없음에도 주석 5-2에 민간 융자금 관련 이자를 표기하여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운영표(성질별) 내부거래 조정사항

(단위 : 원)

과목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계
II. 운영비	131,821,770,745	2,748,078,800	5,908,632,114	(58,236,000)	140,420,245,659
이자비용	-	-	58,236,000	(58,236,000)	-
예수금이자비용	-	-	58,236,000	(58,236,000)	-
VI. 비용총계	1,026,896,591,425	12,147,714,208	9,187,312,116	(23,031,691,000)	1,025,199,926,749
VII. 자체조달수익	193,061,290,144	8,663,404,502	5,737,100,054	(58,236,000)	207,403,558,700
경상세외수익	33,933,359,230	4,620,489,722	2,855,330,314	(58,236,000)	41,350,943,266
이자수익	5,320,598,626	211,818,762	1,893,500,190	(58,236,000)	7,367,681,578
X. 수익총계	1,073,024,777,248	14,959,355,844	31,643,997,283	(23,031,691,000)	1,096,596,439,375

예탁금 이자수익(주차장특별회계) 및 예수금 이자비용(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발생하였으나 내부거래 제거하지 않아 비용과 수익이 각각 58,236,000원이 과대 계상되어 내부거래 금액 제거를 통해 수정하였으며 주석 20. 내부거래의 내역에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6. 성과 보고서

2022년도 관악구 예산 성과사업은 전략목표 9개, 정책사업 목표 47개, 지표수 14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운영한 결과 76.6%인 108개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으며,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하여 각종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된 영향으로 33개 지표의 운영 결과가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과 목표와 예산 결산 내용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9	47	141	28	80	33	1,097,285	1,026,445	70,839

결산검사 과정에서 성과지표(단위)를 (%)로 설정하여 목표, 실적이 백분율로 표시되고, 그 백분율로 달성율을 산출하여 정량 파악이 어려운 사례, 부서의 업무 중 정책사업과 연계된 핵심 사업은 반드시 성과지표로 설정되어 관리되어야 함에도 계량화 및 실적 측정의 어려움 등으로 목표에서 제외된 사례,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성과지표로 정했거나, 목표수준을 낮게 설정하여 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목표를 달성한 사례 등은 향후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산 성과관리 제도는 예산을 투입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성과사업인 만큼 예산과 무관한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예산 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아울러 성과목표를 초과달성하거나 미달성한 경우에는 심도 있는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IV. 수범사례

1. 보조금 현액과 수령액의 차액 발생 최소화

2022년도 보조금 예산현액과 보조금 수령액과의 ‘차액’은 천원단위로 편성되는 예산액과, 10원, 100원단위로 시달되는 수령액과의 차이입니다. 예산액 편성만 하고 보조금이 수령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예산액과 수령액과의 차이가 클 경우 허수예산이 발생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저해가 되기도 하는데, 2022회계연도에 간주처리 또는 수정 간주처리가 잘 되어 올 해 관악구의 보조금 교부차액은 16,280원으로 차액 발생이 최소화 되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개정 건의로 관련 사항 반영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되었던 ‘기타인건비(5103)에 공무직건강보험부담금 신설 또는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5103-01)로 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연계표(JMT) 수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개정 건의를 하여 무기계약근로자의 보험료 등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에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304-04)으로 편성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3. 제4회 및 제5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수상

관악구는 매년 엄격한 회계 관리로 불필요한 예산을 정비해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결산검사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알기쉬운 관악구 결산정보’에는 관악구의 특수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 하여 주민들이 알기쉽게 결산서를 만들었고, 공유재산의 변동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재무제표와 공유재산 간 차이를 전국 최소 수준인 1%가량으로 낮추고 계획한 재정을 철저히 집행한 점 등을 인정받아 ‘2020회계연도 제4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우수상, ‘2021회계연도 제5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